

준공후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

제 호
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98조의5(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)에 따른 준공후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합니다.

시장·군수·구청장

직인

(담당자:

(연락처:

년 월 일

)

)

160mm×60mm[일반용지 60g/m²(재활용품)]

210mm×297mm[일반용지 70g/m²(재활용품)]